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50호

2020년 제1회 직원(경력/신입) 공개경쟁 채용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5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 총 14명(경력 5명, 신입 9명)

구분	직군	채용직급/분야	인원	배치예정 사업 및 직무내용
		합 계	14명	
경력	일반직	5급 사무	1명	(직무내용) 노무(노무사) 등
		6급 환경	1명	(직무내용) 환경관련(수질 등) 점검 관리 등
		6급 기계	1명	(직무내용) 사업장 기계시설 및 공사 설계 운영 등
		7급 환경	1명	(직무내용) 환경관련(수질 등) 점검 관리 등
		7급 기계	1명	(직무내용) 사업장 기계시설 및 공사 설계 운영 등
신입	일반직	7급 기계	1명	(직무내용) 사업장 기계시설 및 공사 설계 운영
		7급 기계 고졸자	1명	
	공무직	7급 전기	2명	(직무내용) 전기 안전점검 관리, 공사, 보안 등
		- 장례	1명	(직무내용) 장례시설 운영 및 설비유지 등
		- 시설 환경	1명	(직무내용) 시설 및 공사 관리 운영보조 업무
		- 수영	1명	(직무내용) 수영강습 지도 및 인건근무, 위생관리, 수영장관련 업무
- 선별	2명	(직무내용) 생활자원화수센터 재활용품 선별 및 감용기동 운영 등		

※ 구분모집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제7조

2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공고 전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2년 5월 6일 전일 출생자) ※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자
- 성별·학력 : 제한 없음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자격 유효함)
(고졸자 :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거주지 제한

구분	직군	채용직급/분야	거주지 기준 (공고일 전일 기준)	비고
경력	일반직	5·6·7급	거주지 제한 없음	
신입	일반직	7급	채용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 ※ 일반직 기술(기계) 7급 - 고졸자 채용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공무직	장례, 선별 시설환경 수영강사	채용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 거주지 제한 없음	

- ※ 고졸자 거주지 제한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제1조
-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

○ 응시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비유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기준일 : 공고 전일)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1개 분야만 응시 가능하고, 자격요건 미달시 응시 불가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일반직 (경력)	5급 (사무) 노무사	▶ 노무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중 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노무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6급 (환경)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 (관련분야)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수질환경 등 점검 관리 ※ (관련자격증) 수질환경 기사 이상
	6급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관련분야) 하수처리시설 사업장 기계시설 및 공사 설계 운영 ※ (관련자격증)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7급 (환경)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주임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 1년(기사) 또는 3년(산업기사)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관련분야)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수질환경 등 점검 관리 ※ (관련자격증)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7급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9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주임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 1년(기사) 또는 3년(산업기사)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관련분야) 하수처리시설 사업장 기계시설 및 공사 설계 운영 ※ (관련자격증)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일반직 (산업)	7급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관련자격증)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7급 (기계) 고졸자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관련학과[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7급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관련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공무직	장래	▶ 장래지도사 자격 필수
	시설환경	▶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선별	▶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수영	▶ 자격요건: 필수자격증(1,2자격 필수)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이상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2. 수상안전요원 자격(대한적십자사, 한국경영자협회, 한국YMCA 등)

다.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모집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
(단,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 학교장 추천시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 성취도 및 석차등급이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인 자(일반직) ([별지 제6호 참조](#))

2) 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출일자 : **면접일 제출**
- 제출대상 : 인터넷 원서접수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개별제출)
- 제출서류(☞제출서류 참고)
 -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 제6호 참조](#))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면접일 직접 제출

3) 주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합격 결정함
 - ※ 학교장 추천서 등 구분모집 증빙서류 제출과 원서접수와 모두 일치해야 함
 - ※ 원서접수 내용과 학교장 추천서 및 각종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함
- 공고일 전일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임용이 무효처리 됨

지적 능력 및 직무적성 등으로 측정

3) 시험시간

구분	과 목	시 험 시 간	비 고
일반직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공과목	NCS(50분)+전공(25분)	객관식
일반직(경력)공무직	인·적성검사	인성(30분)+적성(60분)	OX 및 선택형, 객관식 등

4)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전공과목 안내

구분	직군	채용직급/분야	필기전형	비고	
시험	일반직(기술)	7급	전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전기이론(25문항)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기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기계이론(25문항)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기계고출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기계이론(25문항)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시험 대상자에게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시험 장소 및 대상자 공고시 안내합니다.

* 필기전형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인 면접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5)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합격기준

- (일반직신입)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 60%이상 득점자 중 가점을 합산한 총점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의 150%범위에 해당 되는 사람에 대해 합격 결정

- (일반직경력/공무직)

인성신뢰도 70%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자, 직무적성검사 40점 이상자 중 직무적성검사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총점 순위로 채용 예정인원의 150%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합격 결정

(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 단, 공무직(시설환경, 선별)분야는 기피업무의 채용으로 일부 임용포기가 발생 예상됨에 따라 인·적성검사 합격 인원을 채용예정직원의 5배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다. 2차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 대면 구술심사로 평가(면접시험 대상자 별도 공고)

※ 면접시험 결시하는 경우 2차 전형에 모두 결시한 것으로 처리

2)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3 시험 일정

채용절차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 5. 20. ~ 5. 26.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채용 홈페이지(http://sjfmc.torc.co.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등(☞제출서류 참고) • 접수마감 : '20. 5. 26.(화) 18:00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대상자 발표	'20. 6. 1. 예정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장소 공고 포함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20. 6. 6.(토)	• 서류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진포함) 적용 가산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등 • 응시표 및 신분증 지참
면접대상자 발표	'20. 6. 11.(목)	• 면접시험 장소 및 인성검사 대상자 공고
인성검사	'20. 6. 12. ~ 6. 13.	• 일반직(신입)7급 면접대상자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시험	'20. 6. 18. ~ 6. 19. 예정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제출서류 참고)
최종합격자 발표	'20. 6. 24. 예정	• 개별통보 등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 절차

□ 서류적격 유무 → 1차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 2차 면접시험

가. 서류적격 유무(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1차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 1)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일반직), 인·적성검사(공무직, 일반직경력) 실시
- 2) 우리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필수과목 및 전공과목, 인성적 특성, 인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반직(신입) : 필기시험 50%와 면접점수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일반직(경력) 및 공무원직 :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5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0. 5. 20.(수) 09:00 ~ 5. 26.(화)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jfmc.torc.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 온라인 입사지원서만 작성(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24시간 접수하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접수)

6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 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텔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입사지원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일반직에 한함) 1부(별지 제2호)

나.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장소공고 후(응시표 출력용)

- 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등록(채용 홈페이지 작성)

다. 필기시험시(필기시험일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류출력(별지3호)→사진부착→필기시험장에서 제출]
- 가점 자격증 사본
- 기타 : 수험표(수험번호확인)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병역사항 포함(男)】
- 주민등록등본
- 학교장추천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고졸자 응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을 포함)
 -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가점 자격증 사본 포함, 가점 적용후 미제출시 불합격)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최종합격자 등록자 서류(합격자 별도 공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공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등

6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가 점 부 여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10%	적용대상(1)
의사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3%	적용대상(2)

○ 적용대상(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선발단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 원과 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에 모두(1)(2)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시 OMR답안지에 가점 표기하지 않으면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전형 당일

□ 자격증 가점 부여기준

직무분야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공통 분야 ①	사무 및 기술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사무 분야 ②	사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해당기술 분야 ③	해당기술	해당 분야 기술사, 기능장	5%
		해당 분야 기사	3%
		해당 분야 산업기사	1%

- ※ 일반직(기술) 가산자격증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 준용
- 공통분야와 분야별(사무 및 기술)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1개씩 2개까지 합산 인정함
- ※ 단,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예시) 사무 : ①+②, 기술 : ①+③
- 가산점은 공고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필기시험시 OMR답안지에 가점 표기하지 않으면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전형 당일

□ 면접전형 가점 부여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면접전형의 1%를 가산한다.

7 보수 및 근무조건

- 지급기준 : 우리 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 정년기준 : 60세 (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 부서상황에 따라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근무장소 : 세종시 전 지역 근무 가능자 (**공단 사업장 어느 곳이나 배치될 수 있음**)
 - ※ **필요시 공단 운영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이 제한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 단, 필기시험 및 면접 대상자 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각종 구비서류는 전형기간 맞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확정자 제외)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면직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일분야(직급)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인사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jfmc.torc.co.kr>) FAQ/Q&A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044-850-1257)

- 붙 임 : 1. 자기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 -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2.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스캔저장후 채용홈페이지 저장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기술 관련분야 해당자격증 (별지 제4호 서식)
 5.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6호 서식)

<별지 1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직급/채용분야			
성 명		연락처	
※ 성장과정, 윤리관, 지원동기, 직무경력 및 업무성과, 입사후 포부 등 (3매 이내)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진행에 따라 상세히 기재 제출 요망 -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2019.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2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직급/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임용지원 직위 담당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직무 운영방향 등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매 이내)			

※ 지원자 전체 해당됨

- 블라인드 채용진행에 따라 상세히 기재 제출 요망 -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귀 공단이 채용(임명)절차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진부착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명	
	출생월일	월/일만 기재 ex) 1월 1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출생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동의여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019. . .

작성 자 : (서명)

기술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분야	해당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건설안전, 교통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	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용융,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환경(수질)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학교장 추천서(일반직/공무직)

		채용분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월/일 만 기재(ex7월 1일)			
학력사항	출신학교				
	소재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 일			
학업성적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등/ 명)		※일반직만 해당
	성취평가제 적용	평균 석차등급	※일반직만 해당	평균석차비율	상위 %(등/ 명) ※일반직만 해당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p>○ 위 사람은 우리 학교의 졸업자로서, 해당 채용공고 자격기준 요건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음(공고일 기준 대학중퇴자도 미진학자에 포함)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장 (직인)</p> <p>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p>※ 추가 제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2. 성적증명서 사본 1부(일반직에만 해당함) - 3. 졸업증명서 1부 					

일반직 : 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장 추천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2. 5. 6.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응시기회 부여
-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일반직(기계-고졸자) 7급 직렬 직무분야 해당학과를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B등급 이상이며, 보통교과와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석차 등급이 4.5이내인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 위 50% 이내인 졸업자
 -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성적합산기준 : (졸업자) 고교 3학년 성적 기준
 -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허위학력 기재자 조치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 학교장 추천서 접수 방법
 -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20.5.20.~'20.5.26.)에 채용 홈페이지(<http://sjfmc.torc.co.kr>)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 함
 - 제출 일 : **면접시험일 면접장소에서 면접응시자가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 (1)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1부
 - (2) 생활기록부 사본 1 부.
 - (3)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기재) 1부.
 - (4)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면접장소 주소지
 - 추후 면접장소 별도 공고 예정

공무직 : 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장 추천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2. 5. 6.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응시기회 부여
-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허위학력 기재자 조치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 학교장 추천서 접수 방법
 -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20.5.20.~'20.5.26.)에 채용 홈페이지(<http://sjfmc.torc.co.kr>)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 함
 - 제출 일 : **면접시험일 면접장소에서 면접응시자가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 (1)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1부
 - (2) 생활기록부 사본 1 부.
 - (3)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면접장소 주소지
 - 추후 면접장소 별도 공고 예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1, 2, 4-1, 4-2, 4-3 (모두 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0년 월 일
지 원 자 : (